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임기제공무원 (인권분야) 채용공고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임기제공무원(7급,인권분야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17년 2월 24일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



## 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채용등급	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예정부서	담당 직무내용
인권분야	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	1	임용일로 부터 2년	지역혁신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문정책 개발·실행, 인권기본계획 수립·추진</li> <li>○ 인권교육 및 인권학교 운영</li> <li>○ 관계 법령 조례 등에 따른 인권업무 전반</li> <li>○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</li> </ul>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## 2.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## 3. 응시 자격 요건

- 공통 응시자격 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 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지역 · 연령 · 성별 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○ **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**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※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응시자격요건
개별요건	[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] ○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◆ 관련분야 실무경력 : 시설·단체·기관 등에서 인권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

## 4. 근무조건

○ 계약기간 : 최초 채용일로부터 2년(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)

○ 근무시간 : 1일 8시간(주 5일, 40시간, 09:00 ~ 18:00)

※ 근무시간은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

- 보 수 :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

[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보수규정 제34조 관련)]

(단위: 천원)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
7급(상당)	57,243	40,657

- ※ 연봉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※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 (단,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 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### 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7. 03. 07(화) ~ 03. 10(금), <4일간 09:00~18:00>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대리접수 가능, 우편·Fax·E-mail 접수 불가)
- 접 수 처 : 금천구청 지역혁신과

[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, 7층 금천구청 지역혁신과]

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- ※ 금천구 수입증지(1층 민원여권과 3번창구)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- ※ 대리접수를 할 경우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### ○ 시험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	면 접 시 험		면접합격자 발표
	일 시	장 소	
2017. 03. 13.(월)	2017. 03. 15.(수) 예정	9층 대회의실	2017. 03. 16.(목) 예정

- 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(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### 가. 1차 시험(서류전형)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

### 나. 2차 시험(면접시험)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  
(평정요소 :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)
-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,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(응시자 2명 이하 경우),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### 다. 면접합격자 발표

-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
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채용자격이 부여됨.
- ※ 최종합격자 공고 및 채용은 채용기관(근무예정부서)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.
- ※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6. 제출서류

### 가. 공통사항(필수사항)

#### ○ 응시원서(별지1호 서식) 1부

- 사진 :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(3.5cm×4.5cm)
- 응시수수료(7,000원) 상당 금천구 수입증지 인증

※ 구입장소 : 금천구청 1층 민원실 내 3번 창구

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이력서(별지2호 서식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

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- 자기소개서(별지3호 서식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4호 서식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별지5호 서식) 1부
- 응시자 이력 및 경력 요약서(별지6호 서식)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별지7호 서식) 1부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(원본), 학위증서(석사 이상) 사본 1부
 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)
  - 경력(재직)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(원본)에 한해 인정
 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
  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
- ▶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▶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(경력증명서 제외)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,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▶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## 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(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)
- 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.

## 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

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 
▶ 금천구청 지역혁신과 (☎ 02-2627 - 2574)

**붙 임 : 1) 제출서류 양식 1부.**